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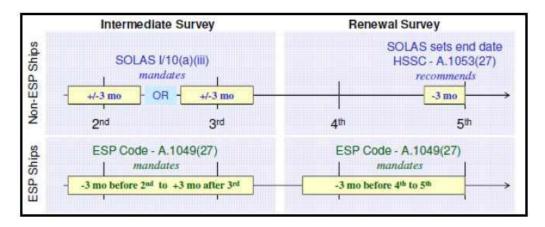
Subject: News Flash of III 2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제2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2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5년 7월 13일에서 17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2차 주요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SP Code 비적용 선박의 화물선안전구조(SC)에 대한 중간 및 정기 검사 시기 변경

● 논의 배경:

- ESP Code 적용선박 및 비적용 선박의 SC 중간 및 정기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



Ⅲ 1 차 회의 시 회원국들은 ESP 비적용 선박의 중간 및 정기 검사 시 요구되는 검사사항 중 일부 항목(구조검사, 두께계측)의 검사 시기를 ESP 대상선박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함.

● 회의 내용:

- 선주가 정기검사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경우 정기검사와 중간 검사 시기가 겹치는(overlap)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각각의 검사 시 시행 되어야할 두께 계측 검사가 한 번만 시행될 수 있음. 기존 ESP Code 에 명시되어 있는 "중간 및 정기 검사 시 요구되는 검사항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않는다."는 문구를 HSSC 검사지침(4.5.2.3)에 추가하는 개정안 검토(단, ESP Code 적용 선박에만 요구되는 "두께계측 요건"은 HSSC 검사지침에서 삭제)

- SOLAS regulation XI-1/2-1 새롭게 추가하는 협약 개정안 검토

● 회의 결과 :

- ESP Code 비대상 선박의 화물선안전구조(SC)에 대한 중간 및 정기 검사 시기 일치를 위해 Ⅲ 2 차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반영한 HSSC 검사지침(4.5.2.3) 개정안 및 SOLAS regulation XI-1/2-1 개정안을 MSC 96 차 제출하기로 결정함
- 2. HSSC 검사지침 및 IGC Code 요건 중 선령 10 년 이상 선박의 화물구역 내부검사 지침의 일치

● 논의 배경:

- HSSC 검사지침 및 IGC Code 요건 중 선령 10 년 이상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내부검사 지침의 일치를 위해 HSSC 검사지침의 개정안을 IACS 에서 제안

● 회의 내용:

- HSSC 검사지침 상에는 선령 10 년 이상인 가스운반선은 중간 검사 항목의 일부분으로 선택적 화물 구역의 내부검사를 시행해야 함. 그러나 "IGC Code 상에는 정기검사(Renewal Survey) 시 선박의 구조,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IACS 는 IGC Code 상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 내부검사는 정기검사 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가스운반선의 경우 HSSC 에 따른 검사 지침 및 IGC Code 에 따른 검사 지침이 상이하여 실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이유로, IACS 는 HSSC 검사지침 (CIn) 2.3.2.3 에 명시된 기존 문구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CIn) 2.3.2.3: 선령 10 년 이상의 선박의 경우, <u>가스운반선</u> 및 건화물 전용 운반선 외 선박은 선택적 화물구역 내부검사를 중간검사 시 시행"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 회의 결과 :

- 전문위원회는 개정안 검토 결과 IACS 의 제안에 따라 HSSC 검사지침을 아래와 개정하는 것을 결정함
- HSSC 검사지침 개정안: (CIn) 2.3.2.3 항 개정 및 (GR) 2.4.2.3 항 신규 추가
- 3. 비자항 무인 바지선(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의 협약면제

● 논의 배경:

- 비자항 무인 바지선의 협약면제 적용에 관한 MEPC 68 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III 2 차)의 추가검토를 요청

● 회의 내용:

- MEPC 68 차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에서 협약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두 문서와 기존 개발된 비자항 무인 바지선의 면제 지침서를 검토 후 전문위원회(III 2 차)에서 최종 확정안을 MEPC 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회의 결과 :

- 면제요건을 MARPOL 협약 각 부속서에 직접 언급하는 뉴질랜드 제안문서를 바탕으로 개정작업 시행함.
-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MARPOL Annex I, VI 검사 및 증서발행 면제에 대해선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룸. 그러나 일부 회원국에서 MARPOL Annex IV 검사 및 증서발행 면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MARPOL Annex IV 면제적용 여부는 차기 MEPC 에서 재논의 예정
 - *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을 5 년으로 설정 시 5 년에 한 번 정기검사만 시행하는 Annex IV의 경우 기국 업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MARPOL Annex I 검사 및 증서발행 면제 요건 중 "기름 기록부에 대한 요건(Reg.17.1)" 면제를 일부 회원국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원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관련 내용 추후 재논의 예정
- 면제증서의 만료일자 지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수의 회원국이 5 년 미만의 만료일자 지정에 찬성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짐서에 반영함.
- 4. SOLAS XI-1/7규칙-"밀폐된 구역의 대기(atmosphere) 시험 장치"에 대한 규정의 HSSC 검사 지침 반영

● 논의 배경:

- MSC 94 에서 새롭게 채택된 SOLAS XI-1/7 규칙-"밀폐된 구역의 대기(atmosphere) 시험 장치"에 대한 검사 항목을 HSSC 검사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IACS 에서 제아

● 회의 내용:

- ◆ IACS 는 하기 밀폐구역 장치와 관련된 아래 검사 항목을 기존 HSSC 검사 지침서(Res.A.1053(27))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적절한 휴대용 대기 시험 장치의 본선 비치 여부
 - 검정 장비 또는 제조자/전문가에 의해 시행된 연간 검정보고서의 본선 비치 여부
 - 최종검정일자의 기록 여부
- ◆ 추가 검정은 화물선 안전설비증서 및 안정증서와 관련된 정기적 검사(periodical) 및 여객선의 안전증서와 관련된 정기적 검사에 시행할 것을 제안함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 상기 IACS 의 제안을 전문위원회에서 동의할 경우 IACS 는 관련 규정에 대한 UI(통일해석)를 개발하여 차기 Ⅲ 3 차 회의 시 제출 예정

● 회의 결과 :

전문위원회는 "밀폐 구역 대기시험 장치" 관련 요건을 HSSC 검사지침에 반영한 IACS 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개정안 승인을 위해 Assembly 29 차에 관련문서 제출예정

5. 출항정지항목 이외의 발견사항(minor findings)의 조치방안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검토

● 논의 배경:

- Ⅲ1차 회의 시 시간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출항정지항목 이외의 발견사항(minor findings) 식별 시 조치방안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검토 의견 제공

● 회의 내용:

- ◆ 통신작업반과 IACS 는 다음에 대하여 합의함
- 선박의 출항정지 결함사항 외 발견사항(minor findings) 식별 시 이는 해당 선박이 협약 요건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명시된 기간 동안 선박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발견사항(minor findings)에 대한 조건부 또는 단기 증서 발행이 없는 경우에도 발견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열람 가능해야 함
- 출항정지 결함사항 외 발견사항(minor findings)에 대한 조건부 또는 단기 증서 발행 여부 및 만료기간 설정이 필요함

● 회의 결과 :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 ◆ 전문위원회는 논의 사항을 검토 후 발견사항(minor findings)에 대한 HSSC 검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출항정지 결함사항 외 발견사항(minor findings)에 대한 조건부 또는 단기 증서 발행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은 해당 사항이 검사원 및 기국의 업무 가중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하여 반대함. 이에 따라, "기국이 요청한 경우, 증서형태가 아닌 확인서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음"으로 개정함

No	기존	변경
1	"발견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발견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열람 가능해야 함"	선박에서 이용 가능해야 함"
2	협약 조건부 증서(Statutory Condition)	확인서 (Condition) - statutory 삭제
3	-	" 기국이 요청하는 경우 , 관련 확인서는
		<u>발급되어야 한다" 신규 추가</u>

6. 협약비적용선에 적용될 수 있는 비강제 협약의 개발

● 논의 배경:

- SOLAS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인 GlobalReg 모델 규정 검토에 대한 자문단 보고서에 대해 상세 검토함

● 회의 내용:

- ◆ 사무국은 "태평양공동체의 협약비적용 선박 요건(PIM Laws)" 및 "소형 상선 안전 코드(SCV)"와 협력하여 SOLAS 비적용 여객선에 대한 1 단계 기준(Tier I)을 금번 회의에 제출함
- ◆ 사무국은 본 의제를 통해 아래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



BRIEFING STATUS

✓ Flash

No. IMO-0010-2015

- SOLAS 협약 비적용 여객선에 적용될 규정의 지침서 초안 검토 및 회원국 회람 여부 결정
- 여객선 외 다른 선종에 대한 규정 1 단계 기준(Tier I)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여객선의 기준과 내용 중복 등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MSC 에 제안
- 2 단계 기준 개발 시 IMO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발하기를 MSC 에 제안

● 회의 결과 :

-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여객선 이외 선종에 대한 Tier I 개발의 불필요성과 이미 개발된 기준을 활용하여 IMO Model Course를 개발하기로 함 -끝-

P.I.C:

Kim Jung-sub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2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